



시간제 등록생 운영지침

2021. 5.

교육혁신단
평생학습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학칙 제47조의2 및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시간제 등록 제도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운영지침에 의하여 등록한 학생은 「시간제 등록생」이라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운영지침은 시간제 등록생 선발에 따른 전형방법 및 수업 운영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.

제4조(지원자격)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제5조(제출서류) ① 시간제 등록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전형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

2.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
(단, 졸업학교에서 성적증명서가 미발급되는 경우(예, 졸업년도가 오래된 경우) 생활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음)

3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재등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지원 시 마다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선발방법)

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, 선발은 일반 학생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(이하 “통합반”)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(이하 “별도반”)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②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 시간제 등록생으로 이전에 지원하여 등록했던 자의 전형료는 면제된다.

③ 전형은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 국어교과 계열 과목의 평균점수,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국어점수로 선발한다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의 성적증명서 상 평어성적만 있는 경우 별표1 [평어 점수표]에 따른다.

④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형평가 고득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.

⑤ 전형료 미납자,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최종선발에서 제외된다.

⑥ 선발기준, 방법,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.

제7조(선발인원)

시간제 등록생은 본교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매 학기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선발한다.

제8조(등록과 선발취소)

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 수업료는 해당 학기 운영 방침에 따라 특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. 단, 할인을 적용시 운영 방침은 유관부서와의 별표2 [수업료 책정 기준]을 협의하며, 그 결과에 준용하여 징구한다.

② 수업료 반환은 학칙을 준용하여 별표3 [반환기준]에 의한다. 다만 수업료 반환금액 산출시 정산방법은 취소 과목 수에 따른 할인을 적용 변경에 따라, 별표4 [수업료 반환금 산출식]에 참고하여 정산한다.

③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④ 전형에 합격하였어도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거나, 입학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또는 전염병 등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수강신청)

- ① 개설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(변경/취소)은 수강신청(변경/취소) 기간 동안 평생학습지원센터 자체 수강신청시스템에서 한다.
- ② 수업이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될 경우,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접수된 자료는 일괄적으로 컨소시엄 학습관리시스템(이하 'LMS')에 등록한다.
- ③ 수강 등록 시 필요한 기본 데이터는 별도 서식에 의한다.

제10조(폐강)

- ① 폐강 최소 인원은 100명 이하로 하되, 교과목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하다.
- ② 폐강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공지한다.

제11조(교과목 및 수업운영)

- ① 시간제 등록생의 교과목은 학칙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교육과정은 통합반 또는 별도반으로 운영 할 수 있다.
- ③ 수업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는 해당 교과목 주관 교수가 담당하며, 필요시 보조 강사(튜터)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(강의료 및 튜터 지원금)

- ① 강의료 지급 단가는 50,000원/1학점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.
- ② 보조 강사(튜터) 활용시 튜터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, 기준 단가는 800,000원/학기로 책정한다.
- ③ 단, 폐강 대상강좌를 부득이 설강하는 경우 강의료 및 튜터 지원금은 교수자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 단가 이내에서 별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)

- ① 평가는 출석, 퀴즈, 리포트, 토론, 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주관 교강사 판단에 의거하여 기타사항도 반영할 수 있다.
- ② 평가방법 및 반영비율은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며 담당 교강사는 '강의계획서'와 '과목 공지사항'에 사전 공지한다.
- ③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 되는 수업일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4조(성적처리)

- ①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와 석차를 담당 교강사가 부여하고, 최종등급은 본교의 등급부여 기준에 따른다.
- ② 성적처리 결과는 별도 서식에 의한다.

제15조(학점취득)

- 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 시간제 등록생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한양대학교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16조(학년배정 및 성적관리)

- ① 시간제 등록생은 학년을 배정하지 않는다.
- ② 성적은 취득년도, 학기, 교과구분, 이수과목명, 취득 학점 및 등급, 점수를 표기하여 관리한다.

제17조(준용)

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운영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5.14. 공포)

제1조 (시행일)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평어 점수표

	수 (100~90점)	우 (89~80점)	미 (79~70점)	양 (69~60점)	가 (59~0점)
반영점수	100점	89점	79점	69점	59점

[별표2] 수업료 책정 기준

① 학점당 수업료 단가

구분	일반인	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(S) / 사회교육원(E)
학점당 수업료 (과목 단가)	68,000원(204,000원)	50,000원 (150,000원)

※ 1과목은 3학점임

② 2021학년 1학기 수업료 납부 세부내역

수강신청 강좌 수	총 납부금액 (과목당 단가)		할인율
	일반인	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(S) / 사회교육원(E)	
4과목 (12학점)	571,200원 (142,800원)	420,000원 (105,000원)	수업료의 30% 할인
3과목 (9학점)	489,600원 (163,200원)	360,000원 (120,000원)	수업료의 20% 할인
2과목 (6학점)	367,200원 (183,600원)	270,000원 (135,000원)	수업료의 10% 할인
1과목 (3학점)	204,000원 (204,000원)	150,000원 (150,000원)	

③ 2021학년 2학기 이후 수업료 납부 세부내역

수강신청 강좌 수	총 납부금액 (과목당 단가)		할인율
	일반인	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(S) / 사회교육원(E)	
4과목 (12학점)	530,400원 (132,600원)	390,000원 (97,500원)	수업료의 35% 할인
3과목 (9학점)	459,000원 (153,000원)	337,500원 (112,500원)	수업료의 25% 할인
2과목 (6학점)	326,400원 (163,200원)	240,000원 (120,000원)	수업료의 20% 할인
1과목 (3학점)	204,000원 (204,000원)	150,000원 (150,000원)	-

④ 연속 수강생에 대한 추가 할인 적용

- 연속 2개 학기 이상 수강 시 직전 학기 과목 수를 포함하여 누적 과목 수에 대한 할인율 적용
- 연속 2개 학기 이상 누적 과목 수가 5과목 이상인 경우, 최대 할인율인 35% 적용

[별표3] 수업료 반환기준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	전액
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	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않음

[별표4] 수업료 반환금 산출식

① 본 시간제 과정 수업료를 학습자의 수강신청 과목 수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, 환불에 따른 해당 학기 신청 과목수의 변경이 발생시, 정산금액의 적용 할인율도 변동됨.

② 상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.

$$\text{반환금} = [\text{납부수업료} - \text{반환시 수강신청 과목 할인적용 수업료}] * \text{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 비율}$$

ex) 2021학년 1학기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소속 4과목 수강학습자 반환에 따른 정산법

구분	개강 전 납부 수업료	5/6 반환 시점 1과목 취소	2/3 반환 시점 1과목 추가 취소	총계
수강신청 과목수	4과목	3과목	2과목	2과목
수업료	420,000원	360,000원+10,000원 (1/6)	270,000원+30,000원(1/3)	310,000원
반환금	0원	50,000원 (5/6)	60,000원 (2/3)	110,000원
산출식	N/A	산출식 1. 참고	산출식 2. 참고	산출식 3. 참고
할인율	30%	20%	10%	

㉓ 산출식 1.

$$\text{반환금} = [420,000\text{원} - 360,000\text{원}] * 5/6 = 60,000\text{원} * 5/6 = 50,000\text{원}$$

㉔ 산출식 2.

$$\text{반환금} = [360,000\text{원} - 270,000\text{원}] * 2/3 = 90,000\text{원} * 2/3 = 60,000\text{원}$$

㉕ 산출식 3.

$$\begin{aligned} \text{수업료} &= 270,000\text{원} \text{ (2과목 할인적용 수업료)} + 10,000\text{원} \text{ (4과목 수강시 환불에 따른 환불 차액)} \\ &\quad + 30,000\text{원} \text{ (3과목 수강시 환불에 따른 환불 차액)} = 310,000\text{원} \end{aligned}$$

$$\text{반환금} = 50,000\text{원} \text{ (5/6 반환시점의 환불액)} + 60,000\text{원} \text{ (2/3 반환시점의 환불액)} = 110,000\text{원}$$